

審 査 報 告 書

2007. 7. 12.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28 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 7. 6)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 상필)

가. 제안이유

-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 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중심의 부서 명칭을 수요자인 고객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 구정을 구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조직 명칭 변경

- 국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
- 부서 : 총 무 과(⇒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 세무관리과(⇒세 무 과)
도시관리과(⇒도시경관과), 환 경 과(⇒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가로경관과), 토 목 과(⇒도 로 과)
교통지도과(⇒주차문화과), 보건지도과(⇒건강증진과)

○ 교육지원 부서 신설

- 주민생활지원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
·행정국 자치행정과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
(안 제7조 제2항 제12호)
- 교육지원과에 『과학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를 신설
(안 제7조 제2항 제13호)

○ 유사기능 업무 통합 운영

-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를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5조 제2항 제9호)
-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 『지하수 개발 업무 및 수자원보존』 업무를 도시관리국 환경과로 이관하여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안 제8조 제2항 제13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순화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 본 조례안은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수요자인 고객 위주의 명

칭으로 개선하고 유사기능 업무를 통합 운영,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구 본청 부서개편은 고객 위주로 10개과를 명칭 변경하여 유사 업무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도시관리국 환경과로 이관하여 유사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 업무를 통합 “교육지원과”를 신설함으로 우리 구 본청 기구가 5국1단2담당관24과에서 5국1단2담당관 25과로 1개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시·군·구 5급 이상 정원책정과 한시정원 책정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사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어 교육의 국제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객 위주의 행정조직 명칭 변경, 유사기능 업무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 안 제4조 중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로 하고
- 안 제7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문화체육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1호, 12호, 13호를 삭제한다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중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로 하고

- 안 제7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문화체육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7호
----------	-----------

제안년월일 : 2007. 7. 6.

제안자 : 윤준용 위원

1. 수정 이유

-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 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부구청장 밑에 설치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 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4조 중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로 하고
- 안 제7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문화체육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1호, 12호, 13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수요자인 고객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 구정을 구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조직 명칭 변경

- 국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
- 부서 : 총 무 과(⇒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 세무관리과(⇒세 무 과)
도시관리과(⇒도시경관과), 환 경 과(⇒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가로경관과), 토 목 과(⇒도 로 과)
교통지도과(⇒주차문화과), 보건지도과(⇒건강증진과)

○ 교육지원 부서 신설

- 주민생활지원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
- 행정국 자치행정과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
(안 제7조제2항제12호)
- 교육지원과에 『과학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를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3호)

○ 유사기능 업무 통합 운영

-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를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5조제2항제9호)
-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 『지하수 개발 업무 및 수자원보존』 업무를 도시관리국 환경과로 이관하여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안 제8조제2항제13호)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399(2006.12.29)
-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제 매뉴얼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 : 2007. 6. 14. ~ 6. 19.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구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보건소·동의 담당관·과장·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여유기구), 민원여권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안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1.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2. 청구민원에 관한 사항
13. 호적에 관한 사항
14.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5.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4.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10. 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4. 새주소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8. 관광진흥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3. 과학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청소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개량,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4.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8.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9.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0.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2.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8.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0.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3.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5.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소관 업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보건소)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및 의약과를 둔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